

-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실천 -
2022학년도 자체 임원 워크숍 결과 보고

□ 개요

- (목적)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선진화 방안 실천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방안 연수
- (대상) 법인 임원진(이사 및 감사)





목 차



1. 사립학교법의 이해	1
2. 학교법인의 이해	2
3. 학교법인의 정관 의미	3
4.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4

※ [붙임]

가. 최근 교육부의 학교법인 관련 감사지적사항

나. 국가 주도 교육이 문제점과 그 대책(명지대 선택수 교수)

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및 목원대 선진화 방안

① 사립학교법의 이해

□ 개념

- 「사립학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학교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 사적자치 영역이었던 사학교육 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통제 등의 규율을 행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의 의미를 갖음

□ 대법원 판례를 통한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

○ 특수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학교법인이나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라는 법적 성격과 독자적인 건학 정신, 전통 및 학풍을 가지고 있음

○ 자주성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

○ 공공성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공교육기관의 하나이며, 교육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음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성

- 총칙,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교원, 보칙, 벌칙으로 구성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제정

□ 연혁

- 1963년 6월 제정되어 87회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학교법인의 이해

□ 의의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립·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학교법인과 민법상 법인의 주요 차이

구 분	비영리법인(민법)	사립학교 법인
목 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 사립학교의 설치
설립인·허가권자	○ 해당 주무관청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 제한 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관련 경험자	○ 제한 없음	○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라야 함
임원의 겸직 금지	○ 제한 없음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음 (단, 학교장은 제외) ○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3 학교법인의 정관 의미

□ 의의

- 정관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정관은 무효이고, 적법한 내용의 정관이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정관은 효력이 없음
- 정관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

□ 한계

-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지만, 동 정관의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를 이탈할 수는 없음
-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을 가진 법인이므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기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관은 「사립학교법」 내에서 운영절차를 정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위법이 됨

□ 정관의 변경

□ 사립학교법

-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학진흥재단 위임)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최근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항

①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소집시 소집일자, 장소등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지

(제32조의3)기금운용 심의회 위원을 15명으로 확대, 교원·직원·재학생을 위원으로 포함

(제70조의5,제70조의6,제70조의7)관할청이 사무직원에게 대해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및 해임 요구

(제72조의3)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

(제74조)과태료 부과 기준추가

②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이사회 소집시 회의 7일전까지 소집일자, 장소등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지

③학교법인 임원등의 인적사항공개 등에 관한고시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등에 공개

붙임 1

교육부의 학교법인 관련, 감사지적 사례(2021~2022)

교명	사례	처분
한○대	· 교육용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금을 교육부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법인 기부금으로 처리한 사례	경고
	· 이사회 심의·의결하지 않고 교육용 항공기 구입 명목으로 1,484억원 차입한 사례	경고
	·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신고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3,250천원)을 매각하여 법인회계 세입처리한 사례	경고
	·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부당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동일 지적(교육부 및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사례발생	중징계 (해임)
	· 교육용 기본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례	시정
	· 법인부담 증여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례(12,090천원) ·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입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일부사용한 사례(124,200천원)	시정, 경고
○여대	· 임원수당은 여비 등 실비 변상 성격임에도 상근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4,400천원)	경고, 회수
	·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미징수(80,344천원)	주의
	· 교육용 기본재산인 오피스텔 4실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하여 관리비만 납부(19,075천원)	경고
중○대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세(355,240천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고발, 시정, 경징계
	·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이사회 회의 개최, 회의록 허위작성, 소집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기우편 미사용(19차례)	별도조치
	· 경직 근거 없이 학교직원을 법인업무 처리(2명)	경고
	· 학교법인부담의 소송비용을 교부회계에서 집행한 사례(3건, 115,500천원)	경징계
○국대	· 이사장 및 총장의 경직신청 및 허가 없이 학교 교직원의 법인근무(과장 1명, 국장 1명)하면서 수당 3,640만원 지급한 사례(9년 6개월)	경고, 시정
	· 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등 교비회계 집행(5,921천원)	시정, 경고
에○대	·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를 2개월 이내 미보충한 사례(5명)	경고
	· 법인 발전기금의 영수증을 지정기부금이 아닌데도 지정기부금으로 발급한 사례(463건, 97,252천원)	경고
부○대	· 최초 기채허가를 받은 목적외로 기채를 사용(580,000천원)	경고
	· 사전 미통지한 안건(12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사	경고

교명	사례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부담 용역비 교비회계 보전 부적정(329,000천원) · 법인 감사(임원)은 정관에서 정한 보수만을 지급함에도 자문료 명목 인건비 지급 사례(66,700천원) 	경고 경고
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소집통지하면서 일반우편물 사용, 미참석 이사에 대해 유선으로 동의 여부 확인 후 이사회 개최(4회) · 이사회 심의 의결없이 수익용기본재산(채권) 처분 사례(1,179,717천원) · 법인이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원 채용 면접심사에 법인이사 참여 부적정 사례(8회) 	경고 경고 경고
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법인회계 세입처리한 사례(776,543천원) · 승소채권 미회수 사례(1,419,792천원)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을 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한 사례(10,363,255천원) · 교원 신규채용 시 법인 이사장 참여 부적정(28회) · 이사회 결정사항(직위해제 처분, 봉급 8할지급) 처리 64일 지연 등 	시정, 경고 기관경고 기관경고 경고 경고
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5필지를 용도변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례 ·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례 · 법인 직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부당 대여한 사례(300만원) · 2월 이내에 이사 결원을 미보충한 사례 ·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하여야 하나 46일 지연 공개한 사례 · 예·결산안 제출 및 심의·확정 법정 기한 미준수(최대 32일 초과) 	기관경고 경고 고발 경고

1. 국가 주도 교육체제의 도입 배경

교육은 “사회활동”이다.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 또한 변화하게 된다. 교육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영역(정치, 경제, 문화 등)에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서양 봉건제와 비교하여 동양식 봉건제는 왕권 중심의 중앙권력이 강력한 가운데 위계적 조직에 기초하여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과거제도 또한 중앙집권 강화의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 나아가 197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험으로 인해 “국가 만능주의” 적 사고가 모두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행정이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목표설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발전을 주도한다는 일원론적인 “발전기능설”에 근거하여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도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이는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4년 시행 이후 학습활동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90년대 초반까지 해당 정책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이러한 성공 신화에 심취하여 “교육은 공공재이고 그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의 밑거름이 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우수대학 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은 교육과 입시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 어떠한 혜택과 특권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 기초하여 동일한 교육내용을 받아야 한다는 평등의 대원칙을 고수하며 자율과 다양화라는 교육의 다른 한 축의 역할에 대해 일말의 고려조차 못 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광복 이후 황폐한 교육 환경에서 국가의 임무를 대신하여 국민교육을 하였음에도, 재정적 열악함과 종종 발생하는 사학비리는 그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국가 주도 교육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이 작금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국가 주도 교육체제의 문제점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문화, 다가치화, 다분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도 핵심역량 개발, 융복합적 문제해결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교육 체제에 대한 획기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한 소품종 대량생산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과 표준화된 교육 과정 틀 안에서 학생들은 대동소이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인지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유형이 서로 비슷하고 선호도 또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¹⁾. 대학 진학이 사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현실에 무조건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2020) 사회조사에서는 대학 전공과 유사한 영역으로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37.3%라고 하였으며, KDI(2020) 조사에서는 전공과 직업 불일치 비율(50% 이상)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였다. 이는 마치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며, 소비자 또한 해당 제품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구매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직종이 유망할지 그리고 어떠한 직종이 새로이 발전하게 될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우 불확실한 변화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도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다양한 진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학생을 육성시킬 수 있게 발전해야 한다. 즉, 상황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며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으로써 교육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서도 중앙집권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지속성은 오히려 매우 떨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임시제도를 비롯하여 교육 과정, 학교 유형과 선택권 등에 대한 정책이 수시로 바뀌며 학교와 학생은 물론 교육 관련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혼동으로 인한 부담감은 공교육의 불신과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단순히 혼란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90%에 가까운 고등교육기관이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평가 항목에 기초하여 일정 등급 이하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조차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라고 통보하였다. 말이 자율이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극약

1)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 (2021). 2021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www.kosis.kr

처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1조 6천억(2031년까지)을 들여 국립대학 하나를 신설하였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어디 한 두 번이었던가. 매년 손바닥 뒤집듯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행정지침들을 보면서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와 이념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교육 수혜자의 요구가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특정 권력자들의 이상을 대변하려는 도구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체제가 활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이의 역할 및 교육청, 교육부와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에 있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 옥상옥과 같이 또 다른 형태의 국가(위원회) 주도 교육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한, 국가 주도 교육체제의 예찬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더불어 무상교육 시행 이후 초중등교육이 공공의 세금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경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공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기업조차도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받는 전체주의 사회와 다를 바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경직된 세출 구조와 규제 일변도의 통제하에 단위 학교의 책무성과 자율경영이라는 개념은 흔적도 찾을 수 없으며 수동적인 보신주의만이 교육 현장에 만연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특정 정책과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정책 효과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검 없이 단지 교육부(청)의 행정지침이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마치 국민의 세금으로 다리를 건설하는데 정말 그 다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리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이득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다리를 제대로 세웠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우리의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은 또한 무엇일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공정과 혁신의 미래 교육

1) 미래 교육의 가치와 목적 재정립: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정의 가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흔히, 기회와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 그런데 기회와 과정의 공정에 있어 그 기저는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정하에 균등한 교육 기회와 동일한 교육 과정을 모두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공정의 가치가 모두가 같다는 동일성(identity)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 천 년 전 한 철학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다양한 분야(법, 경제,

복지)에서 서로 이견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교육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서로 다른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동일한 환경하에서 동일하게 교육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

결과의 공정에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교육 공정의 가장 큰 화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학입시일 것이다. 입시 과정에 벌어지는 불법이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교육 공정과 정의의 화룡점정이라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대학 진학이 사회적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학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입시에서 한 학생이 학생부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맞벌이하셔서 저는 동생을 이끌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활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를 학교 공부에도 활용하여...” 라고 기록하였다. 문제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감점을 하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인가? 공무원입시의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회, 과정 그리고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더라도 100명 중 95명은 실패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평등의 이름으로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여 서로 비슷한 꿈을 가지게 만들며, 경쟁률 높은 대학 진학에서 있어서만 공정의 규칙을 찾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되묻고 싶다. 특정 영역에 경쟁이 치열하다면 다른 영역으로 경쟁을 분산하여, 즉 경쟁과 기회의 다양화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기회를 얻고 발전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론적으로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동일화가 아닌 교육의 다양화, 교육의 질 담보 그리고 맞춤형 진로를 제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통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미래 교육에 있어 정부의 역할: 2015년 UN 총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 hind)” 이라는 구호 아래 17개 주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주목표를 보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유아기부터 청장년 시기까지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지원 시스템(가칭, Diverse & Qualified Education for All; DQEd; 표 1 참조)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 교육에서 국가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정보제공과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설계 교육 과정,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기에 언제까지 규제와 통제로 가득한 교육시스템을 고집할 것인가.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이나 영국의 아카데미, 그리고 이러한 공립학교의 “Privatization”

교원 자격 부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교과목(신산업 직종 소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컴퓨터 응용 능력 교육)을 중등교육 과정부터 개설·운영하고, 대학 또는 산업체와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내실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가 전 생애적 교육(평생 교육)이 필요한 시기임으로 국가는 다양한 진로 교육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대학입시만을 위해 유아기부터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교육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사학법인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원: 현재 기본재산 확보율이나 법정부담금을 100% 충족하는 사학법인이 많지 않으며, 보유재산 또한 수익이 없는 토지가 대부분이다. 이에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학교컨설팅을 모든 사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법인별 맞춤형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익용뿐 아니라 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조건을 완화하여 수익성이 있는 건물 및 현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최소한 수입을 발생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용 토지에서도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획기적인 재정 건전성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나 학교 건물의 공실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부(청)는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립학교 비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 유예를 철폐한다는 것은 사학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국가 관리체제를 더욱 가속하는 방편이 될 뿐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여러 번의 국난을 겪은 상황을 복기해보면, 언제나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상적인 논리와 형식에 얽매이면서 권력자 간 서로의 이익과 안위를 생각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고 말았었다.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는 세계를 제패하였으나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사회는 쇠락하였다는 것도 역사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교육은 학생의 역량 개발과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매개체로써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 의한 지시나 규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에 따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차별로 접근하는 낡은 사고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주도적으로 선도하지 못할 것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교육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무한한 책무를 가지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